

자산의 임대료 관련 정기에금이자율은 2.9%임

Q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면 자산의 임대료는 시가의 50%에서 정기에금이자율(연간 0.0%)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정기에금이자율이 얼마인지요?

A 정기에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2.9%입니다.

자회사와 원재료 공동구매후 수출시

Q 대만,중국에 있는 자회사 및 자매회사와 당사의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당사가 원재료 대금을 미리 지급(대금 결제 조건은 원재료 선적후 1개월이내 지급)하고 한달 후에 자회사로부터 원재료 대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거래절차)

1. 당사가 일본에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수입 통관 후 대만 및 중국 자회사에 수출할 예정
2. 자회사에 수출시 수출가액은 원재료를 매입한 금액 그대로 수출(JPY금액에 환율 적용 USD 로 지급 받음)

질의사항)

1. 공동구매후 자회사에 수출시 수출가액을 margin을 붙이지 않고 매입 금액 그대로 수출할 경우 어떤 tax issue가 있을까요?
2. 만약 margin을 붙인다면 통상적으로 몇 %가 적정한가요? TP 문제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정 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3.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VAT에 대해서 당사가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4. 기타 상기 거래로 발생될 수 있는 국제거래 tax issue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1. 계약서 등에 의해 공동구매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마진없이 구매가액 그대로 수출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공동구매가 아닌 귀사가 매입후 재판매하는 거래라면 국외특수 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정상가격(시가)으로 거래해야 됩니다.

2. 통상적 마진의 적정성은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이 아니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은 국조법 제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모든 물품을 귀사가 구매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동구매의 경우라면 귀사구입분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출채권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금만 인정됨

Q 2020년도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2년 이상지났으면 결산조정할수있는걸로 신설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수출대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인경우만 되는데 위에 신설된걸로 반영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안통한채권도 대손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열거규정되어 있는데, 수출로 인한 채권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된 것만 인정되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비 관련 별도 세제혜택은 없음

Q 당사는 물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작년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사내 임직원 교육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및 도서구입 관련 실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 법인이 직접 법인카드나 현금지출을 이용하여 교육비, 도서구매 관련 지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 2) 직원이 교육비 및 도서 구매 후 법인이 실비정산을 할 경우

A 1. 법인이 임직원의 업무와 연관된 교육비 등을 실비 지원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경우 교육비와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을 없습니다.